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534 관 련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4월 24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유족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, 의료비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의료비 지원의 대상을 ‘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’에서, ‘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, 그리고 유족의 배우자’로 수정하고 괄호 안의 항목을 삭제함 (안 제3조제1항제4조).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제4호 중 “유족이”를 “유족, 그리고 유족의 배우자가”로, “지원 (그 배우자를 포함하고 기존에 지원을 받는 유족이 사망할 경우에도 그 배우자의 지원을 유지한다)”을 “지원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<수정(제안)안 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조(정의) ① (생략)	제2조(정의) (현행 제1항과 같음)	제2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
제3조(지원사업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.	제3조(지원사업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제3조(지원사업) ① (개정안과 같음)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1. ~ 2. (개정안과 같음)
4.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서울시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	4. ----- ----- ----- ----- 지원 (그 배우자를 포함하고 기존에 지원을 받는 유족이 사망할 경우에도 그 배우자의 지원을 유지한다)	4.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, 그리고 유족의 배우자가 서울시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
5. 6. (생략)	5. 6. (현행과 같음)	5. 6. (개정안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4호 중 “유족이”를 “유족, 그리고 유족의 배우자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① (생략)	제2조(정의) (현행 제1항과 같음)
제3조(지원사업) ① 서울특별시시장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.	제3조(지원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독립유공자 및 그 <u>유족</u> 이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	4. ----- <u>유족, 그리고 유족의 배우자가</u> ----- -----
5.·6. (생략)	5.·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